

1.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주권면책이론과 위임이론은 프랑스행정법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이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기여한 이론이다.
- ② 피해자가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직무행위 개념에는 권력작용인 이상 입법작용, 사법작용, 부작위는 포함되나 비권력적 공행정작용 및 사경제적 작용은 제외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 ④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국가배상법 제2조와 민법 제756조는 국가 또는 사용자가 공무원이나 종업원 등의 선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② 예산부족은 이른바 불가항력으로서 이러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하나의 원인이 된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④ 신청인이 배상결정에 동의하거나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3.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통장, 교통할아버지 등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공무원수탁사인, 행정보조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나, 다만 판례는 소집중인 향토예비군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호텔의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 그리고 재판작용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관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운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사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방법이 상당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무원이 행정처분의 내부기준인 재량권 행사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된 경우라면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어떠한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여전히 그 처분은 위법한 상태로 남아있어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직권취소도 가능하다.

5.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국가배상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라 함은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작용의 흠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 ③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상대방에게 주게 되더라도, 공무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공무원의 법령해석 적용상의 잘못에 대해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직무집행의 수단으로서 또는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직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6. 다음 중 옳은 기술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1> 甲은 평소 외로움을 잘 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싫어하는 등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1999년 3월에 모대학 미술과에 입학하여 1학년 과정을 마친 후 1999년 5월 9일 육군에 입대 신병 훈련을 받았다. 甲은 군 입대 후 동료들과 떨어져 지내며 호명에도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등 군생활에 부적응하자 훈련조교, 소대장 등이 구타와 통나무 얼차려를 시키는 등 甲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 甲은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정밀 진단을 한 결과 난치성 조울병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고(1999년 5월 29일) 1999년 8월 30일 전역하였다(甲은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상의 보상금과 급여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甲의 아버지인 乙은 2002년 2월 18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재판은 2005년 7월 16일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에는 보상금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연금법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이는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甲은 이른바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는 공무원인바 우리 헌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은 일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 ㉢ 甲은 비록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는 공무원이기는 하나 보상금청구권, 연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상금청구권 등의 시효가 완성된 날인 2004년 5월 30일부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甲은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는 공무원이기는 하나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비록 국가유공자법의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군인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는 하나 甲이 2002년 2월 18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2005년 7월 16일 현재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차량이 공무원 개인소유이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면 공무원의 경과실 중과실 또는 고의를 불문하고 공무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② 헌법재판소가 기간을 오인하여 잘못된 각하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만약 그 청구가 어차피 본안에서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형사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형사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사정은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8.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

- 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입증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의 일반적인 이론에 의해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 결정은 먼저 거치는 경우,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신청은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 ③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등 권원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재산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은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9. 다음 사례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사례> 자신의 상관인 육군 중사 甲을 뒷좌석에 태우고 공무를 수행하던 운전병 乙의 과실과 자기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일반 민간인인 丙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甲에게 총 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편의상 乙과 丙의 과실 비율은 6:4로 본다) 이에 甲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

- ㉠ 헌법과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중배상이 배제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양자가 동일하다.
- ㉡ 전투경찰순경, 공익근무요원, 군입대후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관례의 입장이다.
- ㉢ 헌법재판소는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위헌재판에서 이중배상금지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 ㉣ 甲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된다는 것이 관례의 입장인 바 이러한 관례의 입장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 헌법재판소는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이 군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한 후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 ㉥ 최근 대법원 관례에 따르면 甲은 병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10.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배상법에서는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위책임설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본다.
- ②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도의적 책임과 관련이 깊고, 손실보상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위험책임으로 인해 양자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③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사후적 구제제도, 금전적 전보제도,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전보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④ 군법무관임용법에는 군법무관의 봉급 등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행정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관례의 입장이다.

11. 다음 중 옳지 않은 기술은?

- ①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1인일 수도 있고 다수인일 수도 있으나 자연인이 아닌 기판 그 자체는 공무원에 해당되기 어렵다.
- ③ 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과실의 객관화, 입증책임의 전환, 위험책임의 법리, 무과실 책임의 인정 등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리라고 볼 수 있다.

12.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5조 책임과 관련,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이 되는데 이 경우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위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비용부담자의 경우도 책임을 지는 바 이 때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국가배상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아래에 있는 경우 하더라도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이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공용개시행위가 별도로 없었더라도 사실상 군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다면 그 도로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법령에 위반하여 라는 개념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공무원의 직무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4.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으로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기준에 관한 객관설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객관설은 하자를 객관적으로 보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가능한 범위에 있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흠결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한다.
- ② 객관설에 의할 때 하자의 존부는 당해 영조물의 구조, 용법, 장소적 환경 및 이용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 ③ 객관설에 의할 때 국가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 ④ 객관설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면책사유로 보지 않는다.

15.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사례> 甲도의 도지사는 그 지역의 A하천에 설치한 제방의 높이가 계획고수량에 미달되어 제방을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으로 보수를 미루고 있던 차에 그 해 여름에 유례없는 폭우로 인하여 A하천이 범람함으로써 동 하천의 하류일대에 거주하는 Y등 주민이 가옥을 유실당하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 ㉠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은 공물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하천, 경찰견, 국유림 등이 모두 영조물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예산사정은 이른바 불가항력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만약 하천관리에 관한 사무귀속자가 국가이고 甲도는 비용부담자라면 궁극적 배상책임자는 甲도라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의 입장이다.
- ㉣ 사안과 같이 5조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 ㉤ Y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甲도지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16.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국민은 위법한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본다.
- ② 하천법 부칙 제2조 등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권으로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가 된 이후에 영업허가를 받은 자도 공공사업으로 인해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이주대책대상자의 수분양권 등 특정한 실체법상 권리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토지취득보상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 40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체적 권리인 수분양권이 취득된다고 본다.

17.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검사를 위한 물건수거의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 내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사원이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법이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국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효력을 직접 다투어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수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원처분주의 원칙상 이의재결이 아닌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④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8.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옳은 기술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환절기에 독감환자가 급증하여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지출이 급증하자 4월15일까지 만10세 이하의 아동과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독감예방주사를 맞도록 권고하는 한편, 만약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병원진료비상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3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동작구 노량진1동에 사는 만9세 아동인 甲은 동작보건소 간호사 을로부터 예방백신을 맞았으나 보통 독감예방백신은 가벼운 근육통과 미열증상이 있는데 甲은 1개월간 고열과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린 바 있다.

<참고조문>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①국가는 제10조의2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제로 50%로 인상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 ㉢ 사안과 관련하여 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는 권리가 희생보상청구권이다.
- ㉣ ㉡의 권리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이다.
- ㉤ ㉢의 권리는 생명 등이 침해된 경우 관계자에게 비재산적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19. 다음 중 옳은 기술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LH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 A시에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2007년 5월 11일 사업인정을 받고 그 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과 매수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그 중 甲, 乙과의 협의가 결렬되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甲에 대해서는 수용면적을 10,000제곱미터 보상금을 1억으로 乙에 대해서는 수용면적을 8000제곱미터 보상금을 7000만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그런데 甲은 수용 면적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乙은 보상금에 대해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 ㉠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보상을 함에 있어 보상을 받을 자의 대표에게 일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주택공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주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이주대책은 만약 위의 사업이 재개발사업의 경우라면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5월 11일자 사업인정은 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확인행위로서 행정처분이며 기속행위라고 본다.
- ㉣ 사업예정지 밖 토지소유자인 丙이 위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된 문제가 이른바 간접손실인바 이러한 간접손실은 피해 발생을 예견하기가 어렵고 그 손실의 범위도 쉽게 확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간접보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I. 甲의 경우
 - ㉤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곧바로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 甲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II. 乙의 경우
 - ㉦ 乙이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경우 乙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의 소송유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외에도 특허법 등에 규정이 있다.
 - ㉨ 자신의 토지위에 농기구 수리업을 하는 乙에게 토지보상금 외에 휴업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乙이 폐업보상을 주장하면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폐업인지 휴업인지의 기준을 실제로 영업을 이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수용위원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 ②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정당한 보상에는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공사후의 공공시설로 부터의 공해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헌법23조3항을 직접 적용하여 손실보상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후급을 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자 부담책임이 인정된다.

21.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권과 사권이 침해의 대상이 되며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 가치는 물론 기대이익도 보호대상이 된다.
- ② 같은 법률 속에 침해규정과 보상규정이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불가분조항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법률에 공용침해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해결에 관한 이른바 직접효력설은 헌법 제23조 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 ③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제약의 구별기준으로 토지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토지이용제한을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있는 학설은 상황구속성설의 입장이다.
- ④ 수용적침해이론은 독일에서는 희생보상청구제도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위법한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수용유사침해이론과 동일한 측면이 있으나, 비정형적인 침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는 수용유사침해이론과 구별된다.

22. 수용유사·수용적 침해 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적 침해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희생을 야기하는데 대하여 본래 의미의 수용은 예측가능한 특별희생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② 수용유사침해이론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과 동일하다.
- ③ 우리나라 판례는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수용유사적 침해로 보고 있지 않다.
- ④ 양자는 모두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 제도가 지닌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독일에서 성립 발전한 이론이다.

2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결과제거청구권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률상 이익에는 재산적 가치있는 이익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② 손해배상의 대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지만 결과제거청구는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③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사실적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 ④ 개인의 토지에 시가 쓰레기를 적치한 경우와 불법주차한 자동차를 경찰이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권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24. 행정쟁송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재량행위인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을 변경하는 일부취소는 행정소송에서는 원칙상 인정될 수 없지만 행정심판에서는 가능하다.
- ② 행정심판의 고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③ 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의 제기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서가 아닌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는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5.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의무이행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 사정재결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② 대통령의 처분을 포함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심판법의 태도이다.
- ③ 행정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후 그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이전되거나 승계된 경우에는 처분을 한 원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26.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제1심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허용된다.
- ②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취소소송에는 적용이 되나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사법(私法)상 통지에 불과하다.

27. 다음 중 옳은 기술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甲은 동작구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인데 처리시설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2010년 5월 11일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동 처분서는 서울특별시시장 명의로 되어 있으나 동작구청장이 통지하였다(한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으나 동 권한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이 되었으며 다시 동작구청장에게 내부위임이 된 상태이다). 이에 甲은 폐쇄명령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명령을 불이행하는 한편, 폐쇄명령에 대해 7월26일 통지자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 5월 11일자 명령은 이른바 직접강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 사안의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는 통지자인 동작구청장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사안의 경우 동작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행정청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甲의 7월26일자 취소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로서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각하되어야 한다.
- ㉤ 甲의 피고 경정은 상고심 종결시까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의 경정은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 ㉣의 경정은 원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 만약 甲의 경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甲은 항소할 수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8.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현행법상 통지절차가 미비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결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의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이고, 처분이 있는 날이란 처분이 고지에 의하여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 ④ 서울특별시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시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9인의 위원으로 진행하되, 민간인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2. 다음 조문과 관련하여 옳은 기술은 모두 몇 개인가?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 행정심판법상의 취소심판과는 소송과 심판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 ㉡ 변경의 의미에 관해서는 소송법상의 변경개념과 심판법상의 변경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 법원은 일부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정당이 당선인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당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항고소송은 아니나 위에서 언급된 소송유형과는 주관적 소송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3.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라면 법무부장관이 그 피고가 된다.
- ② 처분이 있는 후 당해 처분이나 재결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라면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 ③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면 취소소송의 피고는 피대리청이 된다.
- ④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원고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34. 다음 중 옳은 기술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甲은 동작구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인데 처리시설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2010년 5월 11일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동 처분서는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되어 있으나 동작구청장이 통지하였다(한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으나 동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이 되었으며 다시 동작구청장에게 내부위임이 된 상태이다). 이에 甲은 폐쇄명령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명령을 불이행하는 한편, 폐쇄명령에 대해 7월26일 통지자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 5월 11일자 명령은 이른바 직접강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 사안의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는 통지자인 동작구청장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사안의 경우 동작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행정청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甲의 7월26일자 취소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로서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각하되어야 한다.

- ㉮ 甲의 피고 경정은 상고심 종결시까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의 경정은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 ㉮의 경정은 원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 만약 甲의 경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甲은 항소할 수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5.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법원에 대해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행정소송에서도 당연히 허용된다는 것에 학설은 일치되어 있다.
- ③ 판결의 제3자효와 관련된 효력은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 ④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6. 다음 사례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섹시보이라는 만화책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2007년 2월 15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동법에는 고시를 하는 경우 고시 후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월 7일 도서대여점을 경영하는 甲이 청소년에게 도서를 대여한 사실을 적발하고 3월 12일 甲에게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참고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특정인에 대해서는 송달의 방법으로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상대방 보호를 위해 고시 또는 공고를 하여 처분을 할 수는 없다.
- ㉡ 사안의 경우 甲이 5월11일 고시를 본 경우라면 甲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사안의 경우 甲은 2월21일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의 경우 甲이 지정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소송법 제20조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며 이러한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

- ①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이후에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신청에 대한 복직 또는 재임용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③ 법원은 소의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권한의 위임·권한의 대리의 경우 각각 수임청 또는 대리청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며, 한편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8. 다음 중 사안에 대한 올바른 검토를 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안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5년 9월 20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동성에 웹사이트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효력발생일을 2005년 9월 27로 하여 동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해당한다는 고시를 하였다.

검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과 관련하여 웹사이트 운영자가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면 동 처분은 효력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운영자는 2005년 12월 31일에 동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더라도 제소기간에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사안

동작구청장은 2008년 3월 12일 甲이 위장전입자라고 판단하여 甲에대한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3월 31일 동 처분내용을 공고 하였다.

검토

甲이 그 처분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7월 01일이라 하더라도 만약 9월 01일에 말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각하 되어야 한다.

㉯ 사안

동작구청장은 甲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이 처분서는 2005년 9월 01일 甲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다. 甲은 그 당시 출장중이어서 2005년 11월 01일 동 처분서를 경비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검토

甲의 우편물을 경비원이 수령해온 사실이 있다면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한 날에 甲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09월 01일부터 90일이 된다.

㉺ 사안

동작구청장은 2010년 4월 15일 2010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공고하였다. 동작구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은 2010년 8월20일이 되어서 비로소 위 가격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검토

甲이 2010년 9월 1일에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이미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것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9.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

- ①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후 당초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의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은 변경처분이 된다.
- ②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④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0. 다음 중 옳은 기술은 모두 몇 개인가?

甲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A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구청장인 乙(자치구청장이 아니며 영업과 관련된 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되었음을 전제할 것)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였고(2010년 5월 11일). 이에 乙은 2010년 6월 15일 甲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한편 甲은 영업을 하던 중 미성년자인 B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甲은 B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구청장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7월 5일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사기죄를 범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3년이 되던 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 지위에 오른 자이다)

- ㉠ 만약 乙이 7월 8일 청문을 실시하였다면 그러한 청문의 하자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사후적으로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만약 소송에서 B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의 증거가 불분명해진 경우, 사실심변론종결 전이라면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C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 한편 제1심 재판도중 미성년자인 B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증명된 상태에서 乙은 처분을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
- ㉣ 한편 ㉢의 경우 소변경이 없다면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각하하여야 한다.
- ㉤ 만약 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B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도 없어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같은 사유로 또다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이는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취소사유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 乙이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A에게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 乙을 공무원으로 임용한 행위는 비록 결격사유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나 상당기간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상 乙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1.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

- ①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조례를 통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부작위위법확인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
- ②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③ 행정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이익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 ④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내에 제기되었더라도 추가적으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가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면 그러한 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2. 다음 중 옳은 기술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甲은 동작구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인데 처리시설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2010년 5월 11일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동 처분서는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되어 있으나 동작구청장이 통지하였다(한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으나 동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이 되었으며 다시 동작구청장에게 내부위임이 된 상태이다). 이에 甲은 폐쇄명령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명령을 불이행하는 한편, 폐쇄명령에 대해 7월26일 통지자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 5월 11일자 명령은 이른바 직접강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 사안의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는 통지자인 동작구청장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사안의 경우 동작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행정청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甲의 7월26일자 취소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로서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각하되어야 한다.
- ㉤ 甲의 피고 경정은 상고심 종결시까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의 경정은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 ㉣의 경정은 원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 만약 甲의 경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甲은 항소할 수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3.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 관할법원은 행정수도 소재지가 된다.
-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모두 합의제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으로서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재결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 ③ 관련청구소송에는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이 포함되며 이러한 이송결정은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하며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청구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서 계속된 것으로 본다.

- ④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은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익에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4. 판결의 효력 중 옳은 것은?

- ①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취소판결을 받게 되면 소급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효력은 취소판결의 효력 중에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력이다.
- ②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가 인정이 되며 이를 불이행한 경우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는 무효 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확정판결 후 재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이 기속력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강제가 허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④ 형식적 확정력은 실질적 확정력의 전제요건이 되며 실질적 확정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효력은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승계인, 보조참가인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지 않는다.

45. 다음 사례와 관련된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개 인가?

서울특별시장은 4급공무원으로 근무하던 甲을 3급공무원 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 하였으며 그런 심의 결과가 지역방송 및 내부 통신망의 개시한 전자문서를 통해 소속공무원 및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일간신문에도 보도되었다. 그런데 甲은 보도이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발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을 승진임용하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되었다.

- ㉠ 사안의 경우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자 甲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甲의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 바 공무원의 승진신청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의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간접 강제를 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일정한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간접강제를 할 수 없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6.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으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나, 검사에게 압수물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판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 ④ 당사자소송의 제1심 재판관할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47. 다음 행정소송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구비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만약 소송제기시에 심판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그 요건을 구비하였다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관할의 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처분이 있는 후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승계가 취소소송 제기 후에 발생한 것이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법원은 피고를 결정하며 이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④ 행정청이 소송참가한 경우 참가한 행정청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준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제3자가 소송참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또는 제3자의 신청뿐만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48. 다음 중 옳은 기술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甲은 건축사법위반으로 2010년 2월 20일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甲은 자신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4월 25일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건축사법에는 건축사가 연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의 합계가 1년이 넘는 경우 건축사면허를 취소하고록 규정하고 있다)

- ㉠ 4월 30일 甲이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업무정지처분을 집행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2006년 9월 1일 현재 소의 이익은 없다.
- ㉡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경우 2010년 9월1일 현재 소의 이익은 없다.
- ㉢ 만약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건축사법이 아니라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에,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2010년 9월 1일 현재 소의 이익은 없다.
- ㉣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경우 2011년 4월1일 현재 소의 이익은 없다.
- ㉤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경우 甲의 명예 등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어 침해상태가 현재까지 잔존한 경우 2011년 4월 1일 현재 소의 이익은 있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49. 다음 행정소송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행정소송에서도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은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심리할 뿐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④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며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당해 처분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이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것으로 공정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50.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취소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집행정지의 결정에도 준용이 되나 그 성질상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준용되기 어렵다.
- ③ 신청에 대한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간접강제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취지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51. 다음 중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 원자력법 제11조 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의 부지사전승인처분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사업인정
- ㉢ 반복된 거부처분
- ㉣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 ㉤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 ㉥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
-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
-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의결
- ㉨ 한국전력공사가 행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2. 밑줄 친 이것이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것은 소송물에 관한 법원이 행한 판단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도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 ㉠ 이것은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인정되는 효력으로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 ㉡ 행정소송법 제29조① 항의 내용인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내용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 ㉢ 이러한 효력의 실효성을 위해 행정소송법에는 직접처분권이 아닌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 ㉣ 이러한 효력은 청구인용판결에는 인정되나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당한 후 내용상 위법을 이유로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
- ㉥ 사정판결은 청구기각판결이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이러한 효력이 미친다.
- ㉦ 이러한 효력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취소소송의 판결의 주문에는 다투어진 행정행위의 취소 여부가 기재될 뿐이므로, 당해 행정행위의 적법·위법에 관해서는 주문에서 판단되는 것은 전혀 없다.
- ② 취소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용판결(취소판결)은 기판력을 갖지만,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 내지 그 일반승계인에 한하므로, 피고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후에 그 처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은 형성력을 갖기 때문에, 청구인용판결(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처분 또는 재결을 한 행정청의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은 당연히 소멸하고, 당사자만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처분 또는 재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 ④ 취소소송에서 소 각하판결이 있게 되면 대상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는 그 처분의 효력을 다시 다투지 못한다.

54. 다음 중 옳은 기술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1> A는 국립대학교에 교원임용신청을 하였는데 임용권자는 A에게 임용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임용권자는 A에게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A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사례2> 동작구청장은 B에게 건물철거명령을 내렸는바 이에 B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자 계고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계고처분이 절차상 위법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사례3> 한국전력공사는 C건설회사가 입찰을 함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다. 이에 D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 ㉠ A에게 불이익한 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거부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A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 사안의 경우 집행정지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B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는 절차의 속행정지가 아닌 효력정지를 우선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소송법의 태도이다.
- ㉤ B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B가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면 집행정지 결정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C의 집행정지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5. 다음 사례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사례> 한국전력공사는 A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 6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부지사전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1998년 9월 5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부지사전승인을 하였다. 한편 A지역 부근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甲(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내에 있다는 것을 전제할 것)과 乙(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외에 있다는 것을 전제할 것)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냉각수가 대량으로 배출됨에 따라 심각한 어업피해와 환경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1998년 10월 5일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甲의 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중 1999년 4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원자로건설허가를 하였다.

- ㉠ 甲은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도 환경영향평가구역내에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으며, 乙은 환경영향평가구역외에 거주하지만 헌법상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㉔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소송 참가는 원고적격과 달리 법률상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한국전력공사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㉕ ㉔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지위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㉖ 현재 1999년 4월15일인 경우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